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9
----------	-----

제출년월일 : 2000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도세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도세조례에 신설하고, 기타 일부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 신설

- 지방세법에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이 신설(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 6)됨에 따라, 세목·납세의무자·세율 및 신고납부 등 지방교육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함
 -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안 제76조)
 -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다음 세목의 세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안 제77조)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의 100분의 10(다만, 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

-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도록 함 (안 제78조제1항)
- 시장 또는 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78조제2항)

② 도세징수교부금 교부규정 보완

-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있어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도세징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18조제1항)

③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종과규정 삭제

-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가 종과(일반세율의 5배)되는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도세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함 (안 제23조제2항)

조 례 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교육세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2항중 “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고급오락장·고급선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를 “건축 또는 개수로”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3장에 제3절(제76조 내지 제7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지방교육세

제76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100분의 20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77조제1항의 표 제5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세목) ①~②(생략)</p> <p>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생략)</p> <p><신설></p>	<p>제3조(세목)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1. ~ 2.(현행과 같음)</p> <p>3. <u>지방교육세</u></p>
<p>제18조(도세징수교부금)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18조(도세징수교부금)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 <u>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u></p>
<p>제23조(세율) ①(생략)</p> <p>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u>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u>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p>	<p>제23조(세율) ①(현행과 같음)</p> <p>②-----<u>고급오락장·고급선박</u>-----</p> <p>-----</p>

현행	개정안
<p>서울은 제1항의 서울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 ----- -----.</p>
<p>제24조(신고납부 등) ①~②(생략) 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신고납부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건축 또는 개수로 ----- ----- ----- ----- ----- ----- ----- -----.</p>
<p>제48조(신고납부) ①(생략) ②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104조의2에 규정한 날부터 30일이내</p>	<p>제48조(신고납부) ①(생략) <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제49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p>	<p>제49조(납세의무자 등) ①----- ----- ----- ----- --.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p>
<p><신 설></p>	<p>제3절 지방교육세</p>
<p><신 설></p>	<p>제76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7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과 세 표 준</th> <th style="width: 30%;">표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td> <td>100분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td> <td>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액	100분의 5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 세액	100분의 20	
		<p>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시” 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p>			
		<p>제7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p>			

<신 설>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취)
- 지방세법시행령 (부분발취)

관련법규 부분발취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②제1항의 도세징수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100분의 60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50만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7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100분의 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60조의4(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 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③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②법 제1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발굴 2. 문화재의 국외반출 3. <삭제>
4. <삭제>(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2. <삭제>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4. <삭제> 15. 공유수면의 매립 16. 초지조성허가
17. <삭제>(운전연습허가)
18. 무선설비기계의 형식 검정 또는 형식등록 19. 화약류 사용
20. <삭제>(종묘품종 등록) 21. <삭제>(상품권발행등록)
22.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23. 유물복제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26. 임산물의 굴취·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30. 지하수의 개발·이용
- 31. 골재채취
-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33.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허가 면적이 증가되는 허가
- 34. 총포·화학류 수출 또는 수입허가